

	<h2 style="margin: 0;">국제학술교류센터 운영규칙</h2>		규정번호	4-0-3
			제정일자	2007.01.02
			개정일자	2018.09.01
			개정번호	Ver.4
			총페이지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국제학술교류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2. 외국 대학 또는 외국 기관과의 교류 협력
3. 외국 유학생 유치에 관한 업무
4. 기타 총장이 정한 국제학술교류 관련 업무
5.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업무 <개정>(2018. 9. 1.)

제3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 대학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연구원) ① 센터에는 외국어 교육 및 외국과의 교류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원의 임용 및 처우에 대한 것은 본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 규정을 따른다.
- ③ 연구원은 필요시 본 대학의 강의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직원 및 조직) ① 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해 직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 ② 센터는 필요시 하부 부서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부서를 책임지는 부서장을 본 대학 전임교원으로 별도 임명할 수 있다.

제6조 (국제교류 및 유학생 관리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유학생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센터장이 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장 및 운영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2018. 9. 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